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-PMS-2024-033호

2024년도 『자율제조로봇 실증사업』 지원과제 모집 공고

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 공정혁신 및 생산성 제고 등 산업 대전환을 위한 『**2024년 자율제조로봇 실증사업**』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9월 30일

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□ **(사업목적)** 제조환경은 자동화를 넘어 **자율화로 빠르게 전환 중**, 제조 혁신과 A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**산업 대전환 필요**

* (자율제조) AI, 로봇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을 자동화하고, 지속적 공정 최적화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

□ **(사업내용)** 로봇과 기계 등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**독립적인 의사 결정**을 할 수 있는 자율제조 공정라인 구축 지원

* 제조공정 자동화 및 AI 기반 지속적 공정 최적화를 위한 자율제조 공정라인 구축

□ **(지원분야)** 뿌리(기계, 금속·플라스틱, 자동차, 전기·전자), 선박·항공, 섬유, 식·음료, 바이오·화학, 기타 제조 업종 대상

2. 예산규모 및 기간

□ (예산규모) 총 3,000백만원 내외 (기업당 5~15억원 이내)

□ (수행기간) 협약일 ~ ‘25. 5. 31.

【 2024년 자율제조로봇 실증사업 】

지원내용	대상업종	전담기관	선정방식	공모주체	공고 예산규모
실증	① 기계 ② 금속·플라스틱 ③ 자동차 ④ 전자·전기 ⑤ 선박·항공 ⑥ 섬유 ⑦ 식·음료 ⑧ 바이오·화학 ⑨ 기타제조	진흥원	공모 선정	진흥원	30억원 내외

3. 지원대상 및 추진체계

□ (지원대상) 제조환경 내 로봇 기반의 AI 자율제조 실증 수행이 가능한 (세부)주관기관(수요처)과 참여기관(공급) 중심의 자유로운 컨소시엄

○ (총괄주관기관) 비영리기관으로 컨소시엄 수요발굴, 사업관리, 사업비 분배 및 집행, 자금매칭(상생협력금, 지방비) 등 사업수행 관리·지원

* 총괄주관기관은 사업지원 추진체계 구성의 필수 사항은 아님

필수

○ ((세부)주관기관) 현장 적용, 도입 후 성공사례 공유 등이 가능한 로봇기반 AI 자율제조 공정라인 구축 희망 수요기업

필수

○ (참여기관) 기술지원(로봇, AI, 빅데이터 등) 및 설치·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단일 기업 또는 컨소시엄* 등

* 참여기관이 단일 기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사업비 운용 및 컨소시엄 관리를 위해 과제 대표기업(기관) 지정 필요

< 컨소시엄 구성별 역할 >

구분	대상	역할
총괄주관기관	비영리기관 등	▪ (컨소시엄 총괄) 수요·공급기업 발굴 및 사업관리 ▪ (제조로봇 실증)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지원 및 검증지원 ▪ (사업관리)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▪ (사업비) 사업비 집행·관리 및 정산 수행 ▪ (성과활용)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
(세부)주관기관	수요기업 (로봇도입기업)	▪ (제조로봇 도입) 공정라인 구축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▪ (안전인증) 도입 공정라인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(필수) ▪ (성능검증 수검) 로봇도입 후,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▪ (AI데이터 수검)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(원시, 원천)의 검증(구문, 의미) 수검 ▪ (사례공유) 도입결과의 사례 및 성과 공유
참여기관	제조사 및 SI기업	▪ (제조로봇 설치) 자율제조 실증을 위한 로봇SI 기술지원, 대상로봇 설치, 유지보수,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

□ **(평가·관리 체계)** 총괄주관기관의 컨소시엄 단위로 접수된 과제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(세부)주관기관(수요기업) 단위로 평가 및 선정

○ (추진체계) 제조환경 내 로봇 기반의 AI 자율제조 실증 수행이 가능한 수요-공급 기반의 컨소시엄으로 자유롭게 구성

* 모든 과제 평가는 수요기업 별로 평가 및 선정 진행

- (1:N:N) 총괄주관기관 중심으로 수요-공급 컨소시엄 구성

〈 컨소시엄 구성 (예시1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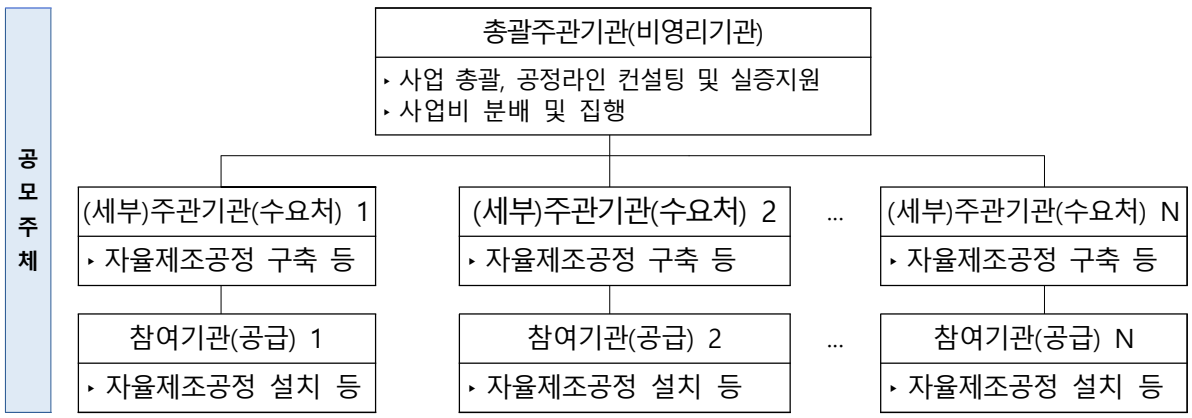

- (1:1) 수요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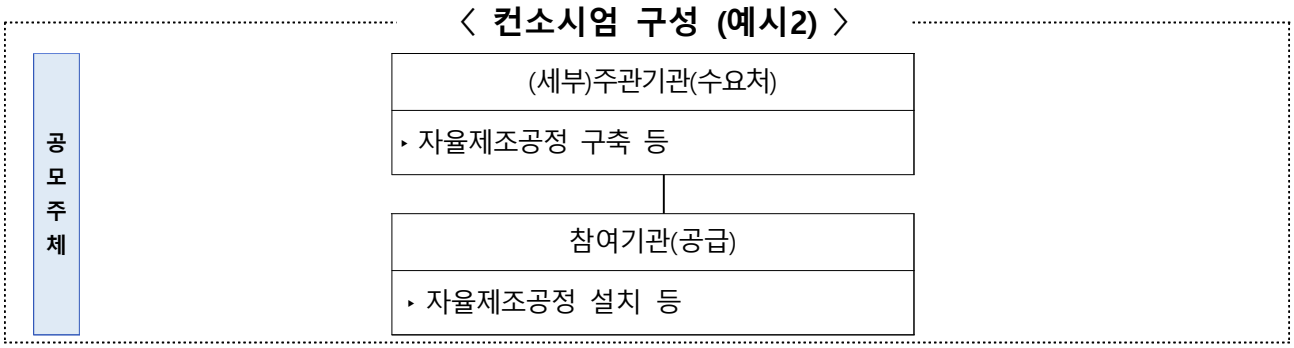

- (1:N) 수요기업 중심으로 다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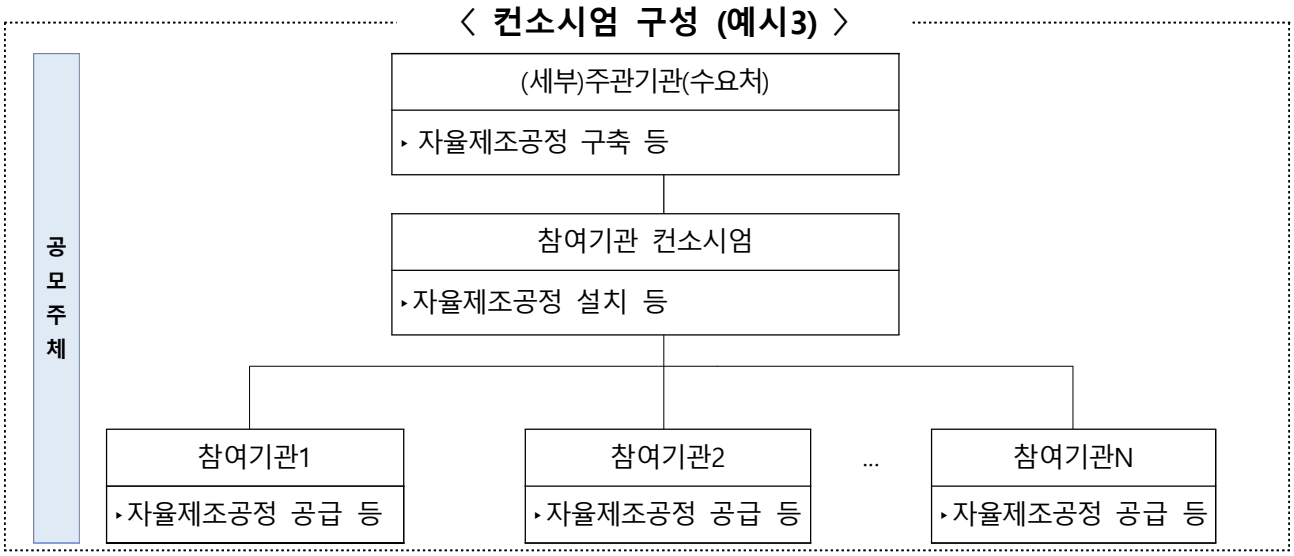

○ **(총괄주관기관)** 모든 총괄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*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세부주관기관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관할지역 내 입주해야 함

* 산업기술혁신 촉진법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, 민법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

○ **((세부)주관기관)** 공정라인을 구축하여 운용 및 사용할 수요기업*으로 공정 설치될 부지(공장)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

* (세부)주관기관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장

○ (참여기관) 로봇 또는 장비 제조사, SI기업 등으로 수요기업에 공정라인 설치 및 유지보수를 일정 기간 제공해야 함

〈사업참여 조건 〉

사업참여주체	총괄주관기관	(세부)주관기관		참여기업
주요역할	총괄	수요		공급
조건	비영리기관	(총괄주관기관이 있을 경우)	(총괄주관기관이 없을 경우)	지역무관
		총괄주관기관의 관리지역 내 기업	지역무관	
컨소시엄구성	단일기관	단일기관		단일 또는 복수기관
중복신청	O	X		O
참여필수	X	O		O

4. 지원규모 및 내용

□ **(지원규모)** (세부)주관기관(수요기업) 당 5~15억원 이내 지원

* 총괄주관기관은 N개의 수요-공급 컨소시엄 지원 가능

○ **(지원내용)**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(로봇 주변 설비 포함) 지원

* 제조로봇, 네트워크, 디지털트윈, AI 솔루션 등 로봇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일체

○ **(실증)** 자율제조 구축을 위한 로봇 자동화 구축, 빅데이터 수집, AI 분석, 검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**제조공정 자동화 구축**

5. 사업비 편성

□ **(편성기준)** 사업비(직접비·간접비) 편성은 「**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**」에 따라 산정하되, 공고문상 별도의 산정기준이 제시된 경우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준용함

□ **(사업비 구성)** 총사업비(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)는 총괄주관기관 **'사업운영관리비'** 및 (세부)주관기관 **'공정라인구축비'**로 편성

* 총괄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총사업비는 '공정라인구축비'와 같음

○ **(총사업비)** 컨소시엄 전체의 사업예산(공정라인구축비 + 사업운영 관리비)

< 총사업비 구성(예) >

<예시 1>

(단위 : 억원)

구분	금액		합계	비고
	정부출연금	민간부담금		
세부주관기관A (중소·중견)	15억원 (70%)	6.43억원 (30%)	21.43억원 (100%)	
세부주관기관B (대기업)	15억원 (50%)	15억원 (50%)	30억원 (100%)	
총괄주관기관 (사업운영 관리비)	**3억원** (30억원 x 0.1)	-	**3억원**	세부주관기관 총 정부출연금의 10% 이내
합계	33억원	21.43억원	54.43억원	

<예시 2>

(단위 : 억원)

구분	금액		합계	비고
	정부출연금	민간부담금		
주관기관A (대기업)	15억원 (50%)	15억원 (50%)	30억원 (100%)	
합계	15억원	15억원	30억원	

<예시 3>

(단위 : 억원)

구분	금액		합계	비고
	정부출연금	민간부담금		
주관기관A (중소·중견)	10억원 (70%)	4.3억원 (30%)	14.3억원 (100%)	
합계	10억원	4.3억원	14.3억원	

○ **(사업비 매칭)** 로봇 공정라인구축비는 (세부)주관기관(수요기업) 구분에 따라 정부출연금 매칭 비율 차등 적용

< 사업비 구성 비율 >

(세부)주관기관 구분	정부출연금 (A)	민간부담금 (B)	기타매칭금 (C)	총사업비 (A+B+C)
중소·중견 기업	70%	자율매칭* (민간부담금, 지방비, 상생협력금** 등)		100%
대기업	50%			

* 정부출연금, 민간부담금, 기타 매칭금 등의 합은 공정라인구축비와 같아야 함.

** 상생협력금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

○ **((세부)주관기관 사업비)** 로봇, 네크워크, 관제, 디지털트윈, AI, 기타 설비 등 자율제조 공정라인 구축을 위한 재반비용 편성

< (세부)주관기관 사업비 편성기준 >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편성기준</th></tr>
<tr><td>공정라인
구축비
((세부)주관기관
대상)</td><td>ㅇ이종복수공정 지원 가능, 동종복수공정 지원 가능
(예시) A공정+B공정+C공정 = 지원 가능, A공정+A공정+A공정 = 지원 가능

< 자율제조 공정라인구축비 구성내역 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자율제조공정라인 설치비용</th><th>빅데이터 및 AI 컨설팅 비용</th></tr>
<tr><td>내역</td><td>▪로봇시스템
- 로봇 + 주변장치 + SW + 기타 설비·장치 등
▪SI비용
- SI기업 인건비성 경비 : 공정라인구축비의 15% 이내</td><td>▪빅데이터 구성 컨설팅
- 500만원 편성
▪AI 모델 적용 컨설팅
- 500만원 편성</td></tr>
</table>
*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의 불필요 항목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
* 자율제조공정 도입비 구성 및 사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임으로 수요기업 차체 부담
* 자율제조공정 도입비 구성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편성
* KPI 감리 수수료, 안전인증, 사업비 정산 수수료는 전담기관에서 부담
* 빅데이터 및 AI 컨설팅은 AI데이터 검증 수행 이력을 보유한 KOLAS공인시험기관 자체 지정</td></tr>
</table>

○ **(총괄주관기관 관리비)** 총괄주관기관은 수요기업(세부주관기관)의 공정라인 구축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업운영관리비(직접비·간접비) 편성

- 총괄기관이 수요기업 발굴, 참여기관 매칭, 사업비(지방비, 상생협력금) 매칭 등 컨소시엄 구성 지원

< 총괄주관기관 관리비 편성기준 >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편성기준</th></tr>
<tr><td>사업운영
관리비
(총괄주관기관 대상)</td><td>**ㅇ편성: 컨소시엄 세부주관기관 공정라인구축비 총합(정부출연금)의 10% 이내**
ㅇ전액 정부출연금(국비) 편성
<table>
<tr><th colspan="4">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사업운영
관리비</td><td rowspan="3">직접비</td><td>인건비</td><td>운영관리비의 40% 이내</td></tr>
<tr><td>연구활동비</td><td>수요발굴 및 홍보활동 등 자율 책정</td></tr>
<tr><td>연구수당</td><td>운영관리비의 10% 이내</td></tr>
<tr><td>간접비</td><td colspan="2">운영관리비의 7% 이내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6. 추진 절차

■ 과제선정 절차

사업 공고	사업 설명회	사업 계획서 접수	심층평가				과제선정 및 협약
			1단계 예비평가		2단계 최종평가		
			재무 평가	서면 평가	발표 평가	예산 심의	
‘24.9.30	‘24.10.초	‘24.10월 말	‘24.11월				‘24.12월
진흥원	진흥원	진흥원	평가위원회				진흥원

■ 실증 과제수행 주요절차

구분	추진 절차	내용	추진주체
협약 체결	① 협약체결	▪선정 컨소시엄 과제 협약체결	진흥원 ↔ 컨소시엄
실증	② 사업비 지급	▪총괄주관기관은 검토를 마친 선정과제에 한해서 공정라인구축비 지급 - (세부)주관기관 사업비(선금 50%) 집행기한 내 선금 집행	총괄주관기관 → (세부)주관기관 → 참여기업(SI)
	③ 안전컨설팅	▪공정라인 구축 전 수요기업 대상 안전 컨설팅 실시 - 설계 안전 진단, 안전조치 방안 등 컨설팅	로봇사용자협회
	④ 공정라인 구축	▪공정라인 기반 제조용 로봇 구축 지원	(세부)주관기관 ↔ 참여기업(SI)
	⑤ 중간점검	▪수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, 공정라인 구축 현황 점검, 애로사항 청취 등	진흥원,외부 감리업체 → 컨소시엄
	⑥ 작업장 안전 지원	▪산업용로봇의 안전인증 컨설팅, 안전인증 등 지원	로봇사용자협회
	⑦ 성능검증 지원	▪로봇라인 시스템의 설치 완성도 검증	외부감리업체 → (세부)주관기관
결과 평가	⑧ 결과평가	▪결과평가를 통한 실증 후 성과 확인	진흥원 → 컨소시엄

7. 평가방법 및 기준

□ 평가 방법

○ 평가 단계별 심의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대면 평가로 선정

< 평가 절차 및 내용 >

구분			내용
1단계 예비선정 평가	평가대상		◦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과제 전체
	재무 평가	방법	◦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재무평가
	서면 평가	방법	◦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사업계획서 **서면평가**
2단계 최종선정 평가	평가대상		◦ 1단계 예비선정평가 통과 과제
	발표 평가 (대면)	방법	◦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**대면평가** *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(세부)주관기관 책임자가 25분 발표, 20분 질의응답 * 총괄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배석 가능
	예산 심의	방법	◦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평가
평가주체			◦ 외부 전문가 5명 이상

* 재무평가 외 모든 평가점수는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
* 1단계 예비선정평가를 통해 필요 선발과제의 2배수 내외 선정
* 2단계 최종선정평가의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 과제의 경우 선정 제외
* 외부전문가는 공인회계사, 로봇기술, 사업화 분야 등의 산·학·연 전문가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

□ 평가기준

○ **(재무평가)** 재무평가 기준표에 따라 수행기관(총괄주관기관, (세부)주관기관, 참여기관), 수행기관의 장,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무 건전성을 서면 평가로 진행

< 재무평가 기준표 >

구분	기준
1	기업의 부도
2	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3	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4	파산.회생절차.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5	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**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,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25% 이하**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T6"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6	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7	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8	재무평가 자료 제출 거부, 누락 등 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

*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수행기관 책임자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
* 본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'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산업 관리지침' 보다 우선하여 적용

○ **(서면 평가)** 사업계획의 구체성, 로봇 활용성, 사업 수행역량, AI 활용성, 데이터 활용성 등을 서면 평가로 진행

< 서면평가 기준표 >

평가항목		평가내용	배점
사업추진 계획	목표의 구체성	◦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및 설계의 구체성 ◦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	50
	실현 가능성		
	예산의 적정성		
로봇	로봇 활용성	◦ 로봇 첨단화 및 로봇 활용 규모	10
수행역량	기관의 전문성	◦ 자동화 및 AI 사업화 실적 ◦ 추진체계의 역할분담 및 전문인력 보유	20
	인력의 전문성		
AI 및 데이터	AI 도전성	◦ 공정 데이터 활용성 및 인공지능 솔루션 설계의 적정성	20
	데이터 활용성		
가점	방산기업	◦ 수요기업이 방산기업인 경우	+2
	상생협력금	◦ 공정라인구축비의 1% 이상 매칭	+2
합 계			**100(+4)**

○ **(발표평가)** 사업추진 필요성, 사업 책임자 역량, AI적용 합리성 등에 대해 (세부)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로 진행

< 발표평가 기준표 >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사업추진 필요성	사업수행 의지	◦ 수요 기업의 공정라인 구축 의지 및 필요성 ◦ 사업비 산출배분의 합리성	60
	사업수행 필요성		
	예산 적정성		
수행역량	사업관리 역량	◦ 사업관리 방법 및 책임자의 전문성	30
	프로세스의 구체성		
AI 활용	AI 실효성	◦ 인공지능 솔루션의 설계의 합리성	10
가점	로봇 구축비율	◦ 공정라인구축비의 30% 이상 로봇구축	2
	지방비	◦ 공정라인구축비의 지방비 매칭	우대
합 계			**100(+2)**

* 발표평가는 별도의 PPT자료 없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발표 진행

< 상생협력금 매칭 기준 >

구분	기준
자금 매칭	◦ (세부)주관기관 공정라인구축비의 최소 **1%** 이상 현금 매칭하는 경우

* (세부)주관기관이 상생협력 기금운용 기업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

* (세부)주관기관은 상생협력출자 기업과 지분 관계가 없어야 함

* 상생협력금 출자 기업의 자금 매칭 확약서 제출(별첨확인)

< 방산기업 기준 >

구분	기준	증빙서류
방산업체 지정	◦ 방위사업법시행령[대통령령 제 33666호, 2023-08-16]에 따라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받은 기업	방산업체 지정 확인 서류
국방품질 경영체제 인증 (DQMS)	◦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·실행·유지하여 인증받은 기업	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
방산업체 납품 실적	◦ 방산업체지정 또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업에 방산관련 물자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기업	납품실적서, 발주서, 세금계산서 등

* 위 방산기업 구분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본 사업에 한해 방산기업으로 인정

○ **(사업비심의)**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정별 정부출연 지원사업비 확정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

< 사업비 심의 기준표 >

심의항목	기준
사업비 적정성	◦ 사업계획서의 BOM List 단가표 및 납품실적서 등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(불인정사항 확인 및 감액)
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확정	◦ 평가위원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확정
최종 지원대상 선정	◦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 과제 선정

8. 선정제외

□ 선정제외

❖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

ㅇ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또는 기타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

ㅇ 수행기관(총괄주관기관, (세부)주관기관, 참여기관), 수행기관의 장,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
ㅇ 수행기관이 로봇산업진흥원 사업에 참여 제한된 경우

9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**(공고기간)** ’24. 9. 30.(월) ~ ’24. 10. 30.(수), 〈30일간〉

ㅇ **(양식교부)**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게시

* 진흥원 홈페이지 : www.kiria.org / 사업관리시스템 : www.kiria.org/pms

□ **(접수기간)** ‘24. 10. 21.(월) ~ ’24. 10. 30.(수) 16:00까지, 〈9일간〉

□ **(접수방법)** 사업관리시스템(PMS)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**온라인 접수**

ㅇ **(접수 주체)** 총괄주관기관 유무에 따라 접수 대상 상이

* 총괄주관기관이 있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이 세부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세주부관별 접수, 총괄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접수

○ **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(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)**

※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kiria.org/pms) '공지사항' 내 매뉴얼 참고

○ **사업내용 관련 문의**

담당	팀	담당자	전화번호	메일
총괄	산업제조 실증팀	주충호	053-210-9571	chju@kiria.org
실무		권건환	053-210-9574	kgh@kiria.org

○ 시스템관련 문의 : 고객센터 070-4047-7287 / 기획예산팀 조승미 선임 053-210-9519

○ 주의사항

1 사업관리시스템(www.kiria.org/pms) '과제신청'을 통해 온라인 접수·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

2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

3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

□ 제출 서류

구분	제 출 서 류	양식 제공	비고	제출 방법
1	사업계획서(PDF) - 총괄주관기관이 있는 경우 (세부)주관기관 별 사업계획서 별도 제출	○	날인본 컬러 스캔본(PDF),	온라인 접수
2	로봇시스템 도입 견적서 - 참여기관(공급기업) 대표자 날인 필수	X	기관별 각 1부(PDF)	
3	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	X	기관별 각 1부(PDF)	
4	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(감사의견 포함) 및 표준재무제표(표지 포함)	X	기관별 각 1부(PDF) ※ 비영리기관 제외	
5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X	원본 컬러 스캔본(PDF)	
6	법인등기부등본	X	원본 컬러 스캔본(PDF)	
7	과제 참여인력 개인정보·과세정보 이용·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	○	원본 컬러 스캔본(PDF)	
8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○	원본 컬러 스캔본(PDF)	
9	참여의사 확약서	○	원본 컬러 스캔본(PDF)	
10	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	○	원본 컬러 스캔본(PDF)	
11	지자체부담 현금(지방비) 출자 확약서 - 지방비 매칭 시 제출(납입 예정일 명시)	○	원본 컬러 스캔본(PDF)	
12	상생협력금 현금 출자 확약서 - 상생협력자금 매칭 시 제출(납입 예정일 명시)	○	원본 컬러 스캔본(PDF)	
13	방산기업 증빙 자료	X	원본 컬러 스캔본(PDF)	
14	기타자료 - 사업계획서(HWP) - 자율제조로봇 실증사업 시스템 구성도 및 AI 적용 프로세스(PPT) - 공정라인 설명 및 시스템 설계 설명 3분 이내 영상(MP4)	-	각 파일 압축(ZIP)	

*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(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,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)

* 사업계획서는 HWP, PDF 양식으로 모두 제출

10. 추진 일정(안)

추진절차		추진일정	주요내용	비고
사업 공고		'24. 9. 30 ~ 10. 30 (30일간)	· 사업공고 개시 ·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	진흥원
↓				
사업 설명회		'24. 10월 초	· 사업 설명회 개최	진흥원
사업계획서 접수		'24. 10. 21 ~ 10. 30 16:00까지(9일간)	·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· 온라인 접수	신청기관→진흥원
↓				
1단계	재무평가	'24. 11. 1 ~ 10	· 제출서류 및 사전지원제외 확인 · 재무건전성 심사	진흥원 평가위원회
	서면평가		· 전문가를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	평가위원회
↓				
2단계	발표평가	'24. 11. 23 ~ 27	·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	평가위원회
	예산심의		· 심의를 통한 사업비 확정	
↓				
선정결과 통보		'24. 11월 말	·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	진흥원→선정기관
↓				
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	'24. 12월 초	· 과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	진흥원↔선정기관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11. 관련 법령 및 규정 등

□ 관련 법령 및 규정

○ 「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, 「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」

□ 기타

○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등

※ 상기 법령 및 규정, 협약서 및 공고문(사업관련 안내자료 포함)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,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(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)을 따름

12. 기타 사항

□ 제출된 서류는 일절(一切) 반환되지 않으며,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됨

□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

□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□ 본 사업은 과제의 효율적 진행 및 공급기업의 발주 진행을 위해 (세부)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입금 후 30일 이내에 선금(**공정라인구축 계약금액의 50% 이상**)을 집행해야함(의무사항)

□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(결과보고서 등)은 사업 종료 시 진흥원에 제출하며, 본 결과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

□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물 귀속 부분은 협약서를 따름

□ 본 사업은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PMS), 사업비관리시스템(CMS) 필수 적용 대상 사업임

* PMS :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kiria.org/pms)
* CMS : 금융권(신한은행)과 연계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비관리시스템(https://kiria.rndcard.com)

□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점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 조치될 수 있음

□ 컨소시엄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사업기간 이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

□ 사업 선정 및 협약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공급기업을 변경하는 경우 이후 진흥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* 공급기업 변경 : (세부)주관기관의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 1년
* 사업 포기 : 컨소기업 내 모든 기관의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 1~3년